2. 장기요양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주소망의집(이하"시설"이라고 한다)의 수급자 모집, 계약, 관리, 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 시설과 수급자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이행 및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본 시설 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시설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춤으로 시설 규모에 의거 시 · 군 · 구에서 지정해준 49명으로 한다.

② 시설 입소 대상자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지,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이용한다.

제4조(시설 정보의 안내)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 · 인력 등 현황자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1)]

1. 시설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2. 시설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정원과 현재 입소한 인원
3. 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여 종류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 운영규정의 개요, 근무체계, 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시설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2)]

제 2장 입소계약 및 관련 절차

제5조(계약의 목적)

시설과 입소자간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입소노인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6조(계약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 1부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는 시설에서 보관한다.[3]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4]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5]

④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한다.[6]

제7조(구비서류)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유 · 무 건강진단서 1통
2. 질병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통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제8조(계약기간)

입소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으로 하고 입소자가 시설 입소 등급에 해당하면 상호 의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1. 입소자 및 가족의 퇴소 신청이 있을 때
2. 입소자 사망 시
3. 장기요양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시설입소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때
4. 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5. 입소자가 민 ·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강제퇴소)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강제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소 후 각종 전염병 등 타인에게 전염 시킬만한 병력을 발견 또는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생명이 위독하거나 장기진료 및 치료를 요할 때
3.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수납비용을 2회 이상 체납할 때
5.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퇴소신청)

입소자가 퇴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퇴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

3)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5조
4)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4조
5)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5조
6)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2조(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변동 시 통보의무
4.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 대리인 선정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
6. 수급자의 사망, 입·퇴소, 외출, 외박 시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인계할 의무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본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수급자 및 가족이 원할 경우 전원이나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④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교육, 종교활동 등에 수급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가 안락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비용수납

제14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해당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② 1일당 수가는 간병 ·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실 사용료, 간식비로 한다.

④ 자원봉사자에 의한 이 · 미용 서비스는 무료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외부에서 전문 이 · 미 용사를 초청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⑥ 입 · 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제15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다.

1.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시설장은 수납하고자 하는 이용료를 실비[7] 한도내에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료 조정이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6조(납부방법)

① 이용료는 해당 월에 이를 수납하되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2개월분 이상의 이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을 일부면제, 할인해 주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지 않는다.[8]

③ 수급자는 이용료를 매월 25일까지 시설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비용 명세서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한다.[9]

⑤ 당해년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가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10]

제4장 시설급여 내용과 비용 부담

제17조(서비스 내용과 비용)

①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은 표〈6-2-1〉과 같다.

② 수급자 개인의 사유물로 관리 보관하는 의류 및 식품, 기타물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③ 상비약 또는 비상약품을 제외한 처방전에 의해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약품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적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특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된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

7)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함

8)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9)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

10)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예상 될 경우 1인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해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전염병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1인실 침실로이동하여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수급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의료서비스 치료절차)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가. 간호(주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다. 간호(주무)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력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주2회 1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병원진료 수 일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하여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수급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에 처리절차

(1)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에 대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자의 병원진료(수시, 정기)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하여 이용할 때에는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수급자가 따로 부담한다.

제20조(의료문제 발생)

① 수급자에게 의료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우선 간호사가 즉시 관찰 · 상담 한 후 표〈 6-2-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질환의 증상 악화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5장 책임의 범위와 한계

제21조(시설물 사용)

① 입소자는 시설물, 공용시설 또는 집기에 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해서는 안된다.

② 시설물, 공용시설, 또는 집기를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거실의 내부구조를 변경 하거나 개인 물건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급자는 거실이외의 시설물에 대해 조작, 구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22조(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입소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상한음식을 제공하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시설물 이용 중 시설물 상태의 문제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

제23조(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내에서 입소자가 자연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치매 등 비정상적 인지적 기능으로 인한 시설 이탈로 실종 된 경우 포함)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당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4조(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전문인 배상책임보장 가입
2. 입소자 정원기준 보장 가입

제25조(자기결정)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26조(비밀보장)

업무상 알게 된 입소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7조(장기간 부재)

① 입소자가 10일 이상 부재중인 사유 발생 시 시설장에게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알려 수급자가 사용하는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15일 이상 부재중인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실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29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본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표를 선출하여 협의한 후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6-2-1〉시설급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급여 서비스의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간호 및 처치 서비스	관찰 및 측정(혈압·체중 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시설환경 관리 서비스	침구·린넨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의복관리, 세탁물관리, 물품관리
치매관리 서비스	행동 변화 대처, 인지 및 정신 기능 훈련
응급 서비스	응급상황대처
복지지원 서비스	상담, 교육, 종교활동, 레크레이션,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입·퇴원 등록, 자원봉사자 관리,

표〈 6-2-2〉 의료문제 발생 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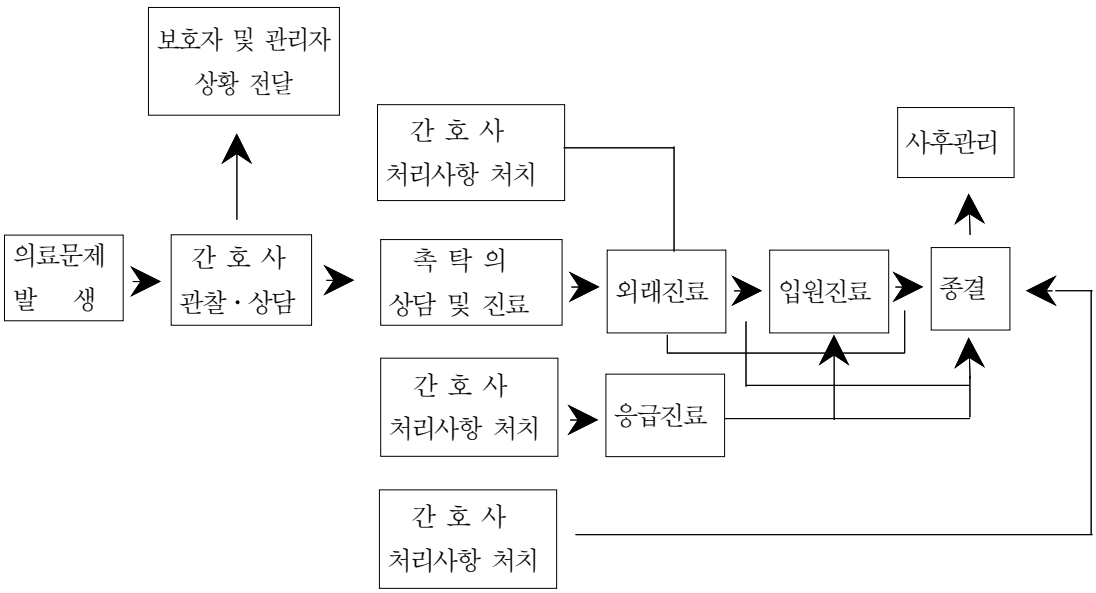
의료문제 발생 시 대응